

# 2020년도 제252회 저작권보호심의회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20. 10. 16.(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신창환 위원(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선임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2건(안건번호 제2020-134250호~13431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금번 심의안건의요로 요청된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원 핸드레드' 등 외국의 방송물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화 '태백권' 및 '오 문화'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으로 복제 전송된 것으로 저작권법 133조의 3에 의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134250호~134319호는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영화, 방송)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134250호~134319호{'□□□□' 사이트의 '(음악)눈누난나 (NUNU NANA)(가수: 제시 (Jessi))' 등 172건의 게시물}는 불법복제한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영화, 방송)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이번 회 심의 대상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등 웹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서 저작권법 제133조의 3 소정의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제25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0. 28.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